

대의원총회운영규정

(개정 2019.12.13.)

총회 운영

제정 1998. 2.10.

개정 2011. 1.12.

개정 2019.12.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(이하 본회라 한다)의 정관 제23조에 따라 총회(이하 "총회"라 한다)의 구성, 기관, 소집,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위)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.

② 총회의 의결에 반하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.

③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의결사항) 총회는 정관 제7조에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4조(구성) 총회는 시도연맹체와 전국연맹체의 회장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회원단체의 장) ① 회원단체의 장이 궐위되었거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.

② 회원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지명된 대리인이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
③ 회원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미 지명한 총회 참석 대리인에 대하여 지명을 철회하고 본인이 직접 참석할 수 있으나, 이미 지명한 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없다.

제6조(대의원의 임기) ① 대의원의 임기는 제4조에 따른 대의원 구성원인 회원단체의 장의 지위를 보유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제5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 출석한 대리인은 해당 총회에 대해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
제7조(의장 등) ① 정관에 따라 본회의 회장이 총회 의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, 이사, 감사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8조(총회 소집 및 공고) ① 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집한다.

② 총회는 총회 개회일 7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. 다만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총회 개회일 21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.

제9조(총회 안건 부의) ① 총회에 부의할 안건은 내부 결재를 거쳐 개회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임시총회는 소집을 요구한 자가 지체 없이 안건을 작성하여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에 대해서는 회장 입후보자를 확정 후 그 명단을 14일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안건상정) 의장은 총회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안건 상정 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장에 게시하거나 총회 구성원에게 유인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

1. 정족수 확인과 개회선언
2. 전차 회의록의 통과
3. 보고사항
4. 심의사항
5. 기타사항
6. 폐회의 선언

제11조(개회선언) ① 의장은 개회시각이 되면 사회자로 하여금 출석자의 수를 확인하여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사회자로부터 의결정족수에 도달되었음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개회선언 후에 국민의례절차를 진행하고 간단한 개회인사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전차 회의록 통과) ① 의장은 개회 첫 순서로 사회자로 하여금 전차 총회의 회의록을 보고하게 하고,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의장은 전차 회의록에 수정 또는 가감할 것이 있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수정 또는 가감하고 그 뜻을 회의록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3조(발언) ①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거수하고 자기의 이름과 소속을 밝힌 다음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
② 2인 이상이 발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먼저 거수한 자를 지명하여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의사진행발언)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부의 안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바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.

제15조(질서유지) ① 대의원이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발언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대의원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총회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를 위하여 대의원, 본회 이사, 감사, 사무처 직원만 참석이 가능하다. 단, 안건 내용 중 총회에서 발언이 필요한 자는 예외로 한다.

제16조(심의의 순서) 각종 안건의 심의는 부의 안건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심의한다. 다만,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7조(안건 부의와 제안 설명)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제10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안건을 부의할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안건을 부의하게 되면 먼저 사회자로 하여금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8조(질의 및 토론) ① 제안 설명이 끝나면 대의원은 안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다.

② 질의가 속출하여 쉽게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은 2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질의 종결의 동의를 제의할 수 있다.

③ 질의종결동의를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그 가부를 물어야 한다.

④ 더 이상 질의를 하는 자가 없거나 제3항에 의한 질의종결동의를 가결된 때에는 의장은 질의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.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를 위하여 의장 직권으로 질의를 종료할 수 있다.

⑤ 질의가 종결되면 대의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다.

⑥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순서로 교차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⑦ 토론이 속출하여 쉽게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은 2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토론 종결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.

⑧ 토론종결동의를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그 가부를 물어야 하며 그 결과가 나오면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.

제19조(동의, 개의 또는 재개의) ① 대의원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부의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대의원은 동의를 성립되면 그 동의의 내용을 수정하는 동의로써 개의를 제출할 수 있고, 개이가 성립되면 또 다른 대의원은 재개의 또는 재재개의의 순서로 다른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동의 또는 개이는 어느 것이나 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한다. 재개의 이하의 수정 동의도 같다.

제20조(표결) ① 의장은 토론이 종결되면 그 토론과정에서 성립된 동의와 각종 수정동의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.

- ② 의장은 표결선언을 한 직후 그 표결방법을 총회에 문의하여 총회의 의사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관 또는 규정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표결방법이 정하여지면 최종 수정동의로부터 시작하여 원동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의를 차례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동의 또는 수정동의 중 어느 하나가 만장일치로 표결된 때에는 나머지 동의에 대한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④ 표결은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여야만 가결되고, 이에 미달하면 부결된다.
- ⑤ 의장은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그 가부를 총회에 선포하여야 한다.

제21조(폐회)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른 의안의 심의를 모두 마친 때에는 폐회를 선언하여야 한다.

제22조(회의록 작성)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
1. 총회의 일시
2. 총회의 장소
3. 출석자의 소속 직위 성명
4. 안건 내용 및 회의 내용
5. 안건의 결과
6. 폐회

② 회의록은 안건 내용과 관련된 사항만 기록을 할 수 있으며 안건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사무처에서 작성 시 생략을 할 수 있다.

③ 원활한 총회 회의를 위하여 회의록 이외에 전자 회의록 초록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제23조(회의록의 승인) 회의록은 차기 총회에서 최종 내용을 승인한다.

부 칙(1998. 2. 1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1998. 2. 10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1. 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211. 1. 12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2. 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본회 종목 명칭 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된 2019. 12. 13.부터 시행한다.